

원도급

원도급 계약	공사개요 ■공사명 ■공사지역 및 현장소재지 ■발주자 ■공종 ■산재보험 ■근로자퇴직공제 ■계약내용
	수급업체 ■대표 ■구성사 여부 ■업종 및 도급금액
	보증금 ■보증금 납부내역
	현장기술인 ■인적사항 ■배치기간 ■자격현황
원도급 계약변경	직접시공 계획서(50억 미만 공사시에만 적용) ■직접시공 및 하도급(예정)공종의 세부공종 및 금액
	공사대금 수령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하도급

	하수급인 개요 및 계약내용 ■ 상호 ■ 대표자 ■ 계약체결금액
하도급 계약 (하도급 계 약 체결시 마다 통보)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주체 ■ 지급기간 ■ 지급주기 ■ 하도급 대금 지급 주체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교부여부 (3개중 선택) ■ 미교부 ■ 교부하지 않음 ■ 제도시행이전
	현장기술인 ■ 인적사항 ■ 배치기간 ■ 자격현황
하도급 계약변경	■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 · 신규 기재사항
하도급 대금 지급	■ 선급금 ■ 기성금 ■ 준공금

기계대여

건설기계 대여	■ 대여받은 업체 ■ 대여기간 금액	■ 대여한 업체 ■ 건설기계명
------------	--	---

자세한 내용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www.kiscon.net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지사항 및 자료실
[원/하도급 사용자 매뉴얼, 잦은질문답변(FAQ), 문의/답변
(Q&A), 작성안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를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이렇게 하세요!

Knowledge Information System of Construction Industry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www.kiscon.net)

경기도청 건설정책과 건설업관리팀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신곡동 800)
T.031-8030-3892~97 / F.031-8030-3899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건설공사를 원/하도급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관한 주요내용을 기재한
원/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전자적(KISCON)으로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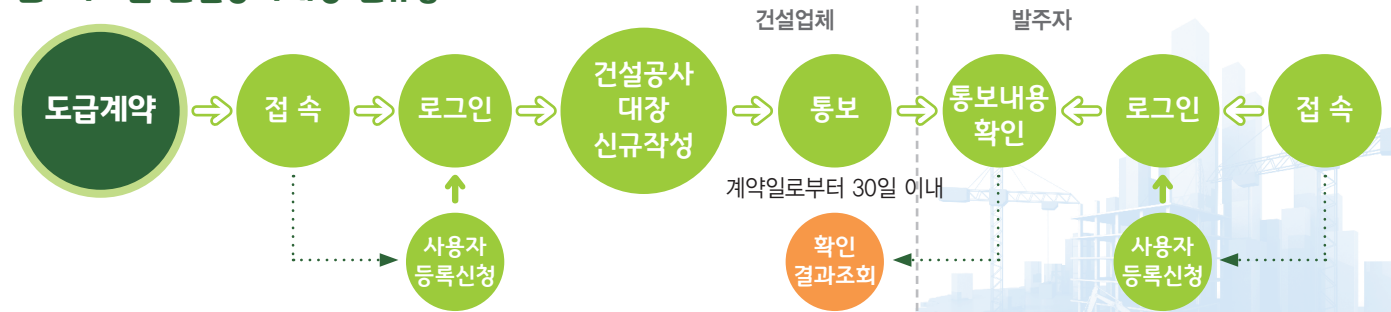
통보대상·공사·방법·시기

구분	원도급공사	하도급공사
통보 의무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통보대상	계약금액 1억원(VAT포함)이상	하도급금액 4천만원(VAT포함)이상 (단, 원도급공사 1억원 이상에 한함)
통보방법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접속하여 전자적으로 발주자에게 통보	
통보시기	도급(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추가)사항이 발생하고 30일 이내	
미통보시	시정명령(시정명령불이행시 및 공사완료일까지 미통보 또는 거짓통보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원도급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기재시 하도급 금액 관계없이 모두 기재

수행절차

원/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신규통보



원/하도급 건설공사대장 변경사항 및 추가사항 통보



통보방법

STEP 1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
(www.kiscon.net) 접속

STEP 2



화면 좌측의
배너를 클릭하면
'건설공사정보시스템'
메인화면이 나타납니다.

STEP 3



미 가입 사용자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고,
가입된 사용자는
아이디/비밀번호
기재 후 로그인

STEP 4



[원도급건설공사대장]
또는
[하도급건설공사대장]
메뉴 선택 후
[건설공사대장 신규작성]
선택

STEP 5



해당사항을 모두 작성 후
클릭
건설공사대장 서식으로
작성 내용을 확인 후
버튼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통보